

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751
------	-----

2005년 6월 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6월 1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
(2005년 6월 24일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)

가. 제안이유

- 하천 및 호수 등 물놀이장소에서 시민의 여가활동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원 봉사자로 구성되는 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당해 시민수상구조대의 구성·임무·지원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- 시장은 물놀이장에서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명구조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, 구조대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자원봉사자로 구성하도록 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- 시장은 구조대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고,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, 구조대의 임무수행을 지도·감독하도록 함(안 제5조 내지 제7조).
- 시장은 구조대원의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, 구조대원이 임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(안 제9조 및 제10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(전문위원 이 청 수)

가. 조례안의 제안 배경

- 동 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생활 및 여가 여건이 향상되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 자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.

나. 조례안 제출시기에 대한 문제

- 서울시에서는 연일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는 한강변의 각종 수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'119시민수상구조대'를 2004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음.
- 그러나, 수난구조대의 설치, 구성 및 임무, 활동기간, 자격요건, 활동비 지급, 보험가입 및 보상, 포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임의적으로 설치·운영되고 있으며, 수난구조대원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마땅한 보상근거가 없는 실정이었음.
- 이에 소방방재청장은 2004년 12월 31일 '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·운영조례 준칙'을 제정·시달하고, 지역실정에 맞춰 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.
- 그러나,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3월 17일야야 입법예고를 했으며,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지(4월 6일), 2개월이 넘어서야 의회에 제출한 것은 동 조례안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음.

- 이로 인해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금년에도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, 지난 3월 ‘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계획’을 세우고 36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였음.
- 시민수상구조대의 본격적인 운영기간(7.1~8.31)을 불과 10여일 앞둔 현 시점에서, 동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사전 대비가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회가 충분히 검토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한하였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함.

다. 조문에 대한 검토

- 제2조(정의)에 있어, “시민수상구조대”는 법적 근거가 있는 용어가 아니고, 이 조례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“시민수상구조대”에 대한 정의 없이 “물놀이장소”에 대해서만 정의 내린 것은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기 어려움.
- 제3조의 제목 “설치”를 “설치·운영”으로 하는 것이 이 조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설명한다고 할 것이며, 조례안과 같이 시장이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“시민수상구조대”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도록 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본부장이 설치·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지며,
- 이하 제5조(시설·장비 등의 지원), 제6조(교육·훈련), 제7조(지도·감독), 제8조(활동비), 제9조(보험가입) 및 제10조(재해보상) 등에서도 행위의 주체가 시장보다는 소방본부장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.
- 제6조(교육·훈련)의 경우도 “구조대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교육·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, 선발한 수상구조대원에 대한 교육·훈련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.
- 제8조(활동비)의 경우도 ‘수상구조대원’이 자원봉사자 신분임을 고려해 ‘서울특별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’ 제2조[별표1]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”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.
-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임.

라. 종합 검토의견

- 소방방재청의 준칙안 중 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기간, 운영시간, 근무방법, 모집선발, 보호조치, 운영계획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‘조례규칙심의회’에서 기술적·세부적인 조항이라는 이유로 대폭 삭제한 바 있음.
- 그러나, 동 조례안에서 시민수상구조대의 기능과 역할, 보호조치 등을 최초로 규정하는 만큼, 지나치게 기술적이거나 실무운영과 관련된 세부조항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의회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.
- 본 조례안과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경우 원안을 폐기하고 우리 위원회 안으로 대안을 제출할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‘시민수상구조대’의 본격적인 활동을 10여일 앞두고 조례를 제출한 것은 적절한 업무수행이라 볼 수 없음 → 추후 재발 방지 약속.
- 법적 근거도 없이 360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이유 → 활동기간(7월 1일부터 2개월간)이 임박하여 부득이하게 모집하게 됨.
- 소방방재청에서 제정·시달한 준칙안과 상당히 다르게 조례안이 마련된 이유 → ‘조례규칙심의회’에서 기술적·세부적인 조항이라는 이유로 대폭 삭제됨.

5. 토론요지

- 동 조례안의 위상과 역할에 맞도록 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·운영 주체를 시장에서 소방방재본부장으로 하고, 시설·장비 등의 지원, 교육·훈련, 지도·감독의 주체를 시

장에서 소방방재본부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.

- '시민수상구조대'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, 교육·훈련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며, 자원봉사 신분임을 감안하여 필요한 실비 지급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전원일치)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.....